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의 내용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
|---|--|-------------------------------------|
| 법 제9조제2항 제1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외래·입원 진료 | 급여비용의 전부 |
| 법 제9조제2항 제1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약국 |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급여비용의 전부 |
| |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 | 약사가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100분의 85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중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부담률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환자 등 중증환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여 저소득층인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의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던 자기공명영상진단에 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

●대통령령 제1913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3호라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2항제2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을 제외한다)”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8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로 하고, 동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제119조제1항제1호중 “토지를 취득”을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 전단중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전단중 “토지를 취득하고자”를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로 하며, 동항제2호중 “토지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토지이용의무 등) ①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
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
우

4.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5. 「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9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2. 법 제119조제1호나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3. 법 제119조제1호다목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4. 법 제119조제1호다목의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다만, 토
지의 취득 후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
우에는 5년으로 한다.

5. 법 제119조제1호라목 내지 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
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7.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토지이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
제1항제7호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
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아니하므로 자연공원의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594호, 2005. 7. 13. 공포, 2005. 10. 14.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5년의 범위 이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영 제85조제5항제3호 단서)

- (1) 자연공원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물의 개량이 곤란하여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음.
- (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150퍼센트 이하에서 2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

(3) 용적률의 완화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 개량으로 새로운 관광수요에 적합한 개발 및 자연공원 이용자에 대한 보다 나은 편의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의 설정(영 제124조제2항 신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년의 범위 이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함.
- (2)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및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3년,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4년,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2년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게 하는 등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을 정함.

<법제처 제공>